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70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복기왕·전현희·이용우

정준호 • 채현일 • 한민수

이연희 • 전재수 • 김종민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상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총공사 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차 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 건비 등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계약기간(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총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변경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금액 조정)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			
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설계변경, 계약기간(제21조제2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	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있		
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	어서 총계약기간을 포함한다)		
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u>의 변경 및</u>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